

이재호	
장외부근	

2013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3. 6. 14.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3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13. 6. 14(금) 14:00 ~ 15:10

2. 장 소 : 우리 협의회 회관 소회의실

3. 참석인원 : 재적이사 27명 중 22명 참석(감사 2인은 정족수 제외)

가. 참석(12명) : 이동한, 송옥희, 고봉식, 고치환, 박정해, 양은정, 강규진, 양광호, 김군택,
김호성, 임태봉, 고두승



나. 위임(10명) : 김재익, 김성산, 김성숙, 고은택, 강동화, 김금자, 최영열, 부형중, 김순호,
김용희

4. 개회 및 성원보고

김성건 부장의 성원보고 후 이동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5. 의장인사

올해 저를 포함한 5대 임원 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회장 등 선거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논의를 하였으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 오늘 제2차 임시이사회를 부득이 개최하게 되었다고 하며, 참석하신 이사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하다.

6. 전차회의록 처리

- 의 장 : 김성건 부장에게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라고 하다.

- 김호성 이사 : 김성건 부장의 전차회의록 낭독에 앞서 회의자료에 첨부된 사안임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를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전차회의록이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언하다.

7. 부의안 심의

가. 부의안 채택

- 의 장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제1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운영규정 개정안 이라고 하고, 이밖에 협의회와 복지관, 어린이집 발전을 위해 추가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부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이사를 원안상정을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원안대로 1건의 안건이 채택됨을 선포하다.

나. 부의안 상정

- 의 장 : 제1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운영규정 개정안을 상정하다.

다. 부의안 제인설명 및 질의

- 의 장 : 협의회 김성건 부장에게 제인설명을 하라고 하다.

- 김성건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1호 의안에 대한 제인설명을 하다.

- 의 장 : 김성건 부장에게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한 부분들에 대해 규정 내용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부연설명하라고 하다.

- 김성건 부장 : 지난 임시이사회에서 추가되어야 할 사항으로 논의되었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6의 조문으로 신설하였고, 입후보 등록시 공약사항을 함께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공약사항을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는 사항을 신

설하였다고 설명하다.

- 의 장 : 제인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을 요청하다.

- 김군택 이사 :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는 하지만 민간단체에서 굳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많다고 하다. 이전에는 이사회 등을 통해 대표를 추대하고 총회에서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었다며 선거제도에서 우려되는 회원들간의 불화와 같은 상황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다. 불가피하게 선거를 고려해야 한다면 그와 관련한 규정들은 명확히 정해져야 할 것이며, 선거일 지정을 임시총회로 한다면 관철지만 별도의 일자를 정한다면 선거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다. 그리고 당선인 결정에 있어서 개정안에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통상 연장자 우대 조건을 넣는 경우는 선거인 수가 1,000명이나 10,000명 이상이어서 시간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재투표 성립이 힘든 상황에 적용하는 사항으로 우리 협의회 같은 경우는 재투표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진행한 다음 재투표 결과도 유효득표수가 동일하면 연장자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또한 선거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하다.

- 고두승 이사 : 선거일은 임시총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 또한 추가하여야 하며, 제7조의6(선거운동의 금지·제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하다.

- 김성건 부장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사회에서 선거일을 정하면 임시총회 개최일이 된다고 설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회장 등 선거에 관한 규정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내용이 있다고 답변하다.

- 양광호 이사 : 지난 이사회에서 선거운동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논의를 하다 이번 이사회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 시안에 대하여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사항을 이번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개정안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장을 위원회와 위원장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라는 표기를 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한다. 또 회의자료 3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7조 제4항 후보자 등록서는 선거일부터 5일전 2일간 접수한다고 했는데, 선거를 준비하는데 있어 시일이 촉박할 것으로 보이며, 후보자토론회도 개최하는데 짧은 시일내에 모두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한다. 그리고 후보자 기호투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할 것이며, 공약사항을 소개하는 공약자료를 A4용지 3매 이하로 했는데 A4용지 1장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고두승 이사 : 공약자료는 A4용지 1장이 적당한 것 같으며, 후보자토론회는 별도로 개최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니 총회 당일 현장에서 후보자의 소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추진해도 될 것 같다고 한다.

- 양광호 이사 : 대리인 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해 묻다.

- 김성건 부장 : 우리 협의회 회원은 크게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체회원의 경우 대표자를 대신하여 임직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단체 대표자를 대신하여 대리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하다.

- 김성건 부장 : 단체회원으로 가입한 자들의 대표자가 개인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 투표가 불가능하면 1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김군택 이사 : 단체회원 대표자가 유고시 대표자가 위임하는 임직원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하다.

- 김성건 부장 :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만약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회원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설명하다.

- 강규진 이사 : 인쇄협회 중앙회에서도 업체들의 대리투표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며, 대리인 점수를 언제까지 할지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다.

- 고두승 이사 : 대리권 행사가 없어지면 단체회원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 같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이 자리에서 세세한 내용을 모두 정할 수는 없지만 신분증 소지 등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은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하다.

- 김성건 부장 : 지난 2010년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투표관리 규정집을 제작했는데, 이번에도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현재 제시된 개정안에 선거인과 선거권자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일해야 할 것이라고 하다.

- 김성건 부장 : 선거권자로 통일하겠다고 하다.



- 의 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더 이상의 의견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며, 오늘 상정된 조직운영규정 개정안 중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고, 회장 등 선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제7조(임후보자의 등록) 제4항을 선거일부터 7일전 2일간으로, 제10항을 후보자는 공약사항을 소개하는 공약자료를 A4용지 규격 1매 이하로 수정하고, 제7조의5(후보자토론회)를 사전개최가 아닌 임시총회(선거일) 당일 일정 시간의 소견발표로 수정하고, 제9조(당선인 결정) 제1항 제1호를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시행하고 재투표 결과 유효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규정전문에 대해 선거인을 선거권자로 통일하여 수정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해 참석이사들의 동의를 묻다.

- 양광호 이사 : 수정된 규정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다.

- 고봉식 부회장 : 제청하다.

- 이사를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오늘 상정된 의안인 제1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운영규정 개정안 중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 가결하고, 회장 등 선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주문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8. 기타사항

- 의 장 : 우리 협의회 단체회원인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이상연 관장이 제주 일보 6월 11일자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장 명의로 우리 협 의회가 아리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제주 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고 하다. 마치 우리 협의회가 지금까지 복지관 운영에 있어 불법적 특혜를 받아왔고 공정성과 투명성 등에 의심을 가질 소지가 있다는 누앙스의 내용으로 회원으로서 우리 협의회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보 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양광호 이사 : 이사회를 포함한 우리 협의회에서는 아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물적·인적 자원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왔는데 마치 우 리 협의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하다. 당사자를 이사회에 참석시켜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면 이사들 중 일 부가 따로 만나든지 해서 이 사항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하다.

- 김호성 이사 : 내용을 살펴보면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갖고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다. 지금까지 우리 협의회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전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민들이 이 기고문을 봤을 경우 사회복지협의회가 상당한 문제가 있고 무언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오해를 가질 만하다면서 지금까지 우리 협의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사항을 정리해서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하다. 이상언 회장을 이사회에 참석시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라며,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자고 하다.

- 김군백 이사 : 회원 제명제도는 있는지 묻다.

- 의 장 : 우리 협의회는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고 하다. 이상언 회장이 생각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는 소명의 기회를 갖고 그 후에 결정을 내려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하다.

- 고봉식 부회장 : 이상언 회장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기고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김호성 이사 : 이상언 회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다.

- 의 장 : 일단 소명의 기회를 준 것이므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될 것이라고 하다.

- 고두승 이사 : 1992년 8월에 개관한 아리조함사회복지관은 초창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당시 강도아 사회복지협의회장이 무보수로 관장을 겸직

하면서 봉사를 해왔으며, 어려운 시기에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과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자리를 잡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다. 그런데 이러한 그동안의 노력은 다 생략된 가운데 이제 와서 협의회는 빠지고 다른 곳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협의회가 그동안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모를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 특히 그 어려운 시기를 협의회의 노력으로 극복해 왔는데 그 사항을 등한시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다.

- 고지환 부회장 : 이상언 회장이 제주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복지관의 역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고 하다. 또한 이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도 섞여 있는 것 같다고 하다. 몇몇 이사들을 선별하여 이상언 회장을 만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하다.

- 의 장 : 잘 모르고 했으면 찾아가서 설명하고 바로잡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상언 회장은 개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복지관협회장이라는 직함을 걸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과 소명을 듣지 않고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다. 그리고 협의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사항을 그냥 넘긴다면 앞으로 회원들을 이끌어 가기가 힘들고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조직의 근간에 대해 위협받을 위험성이 있다면서 이 사항만큼은 정확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하다. 이상언 회장을 다 음 이사회에 참석시켜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이후에 규 정대로 처리를 하면 될 것이라고 하다.

- 박정해 이사 : 이상언 회장에게 참석하라고 해도 참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다음 절차는 제명인데 그러면 함께 사회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집안싸움 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다. 고치환 부회장님 의견처럼 이사 몇몇 분이 이상언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바로잡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다.

- 의 장 : 개인의 발언이라면 박정해 이사님의 말씀처럼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관 협회장이 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행에 있어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면서 지난 정기총회에서도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문제를 갖고 이야기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협의회 이사회에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지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다.

- 고봉식 부회장 : 언론에 이러한 내용을 기고했다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명예를 상당히 실추시켰다고 보아야할 것이라고 하다.

- 고두승 이사 : 정기총회에서야 어떠한 발언이라도 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언론을 통해 이러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무언가 문제가 있든지, 사회복지계가 무슨 분란이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다.

- 박정해 이사 : 사회복지관협회장으로 언론에 기고를 했지만 회원가입은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어 만약 제명이 이뤄진다면 영락복지관 법

인인 영락교회와도 연관이 지어질수 있다고 하다.

- 의 장 : 공식적으로 영락교회 김정서 담임목사에게도 이러한 사항을 알리고 법인차원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하다. 다 음 이사회 일정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고두승 이사 : 6월 24일 오후 2시에  어떠한지 의견을 제시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6월 24일 오후 2시에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상언 회장을 참석시켜 답변을 듣고 단체회원 제명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선언하다.

9. 폐 회

- 의 장 :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밝히고 폐회를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 김군택 이사 : 폐회를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2013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15:10)

2013년 6월 14일

의 장 : 이



이 사 : 고



성



고



고



김



김



박



양



임



강



양



확인자 : 김



기 록 : 김

